

작성방법

- 1. 청구인 및 대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(실제 거주하는 주소)를 적으십시오.
 - 2. 대리인란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며,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가. 청구인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형제자매
 - 나. 청구인의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
 - 다. 변호사
 - 3. 결정통보의 처분 연월일란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는 날을 적으십시오.
 - 4. 결정통보의 문서번호란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을 통보받은 문서번호를 적으십시오.
 - 5. 심사 청구 이유는 별지로 작성하되, 원처분의 위법·부당한 내용을 서술식으로 적고,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십시오.
- ※ 청구인, 대리인, 대상군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,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.

처리절차

